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표현 정비>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744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2
3. 관계기관 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1명
2. 제 안 일 : 2024. 12. 19.
3.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제197조 제목 중 “태양(態樣)”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조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 해당 조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97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176조).

현 행	개 정 안
第197條(占有의 態樣) ① ・ ② (생략)	第197條(점유의 모습) ① ・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97조는 조제목을 ‘占有의 態樣(점유의 태양)’으로 하면서,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패소한 때에는 소제기시부터 악의점유로 본다고 규정(제2항)하여 점유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추정과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¹⁾

해당 조제목의 態樣(태양)은 ‘생긴 모습이나 형태’²⁾를 뜻하는 용어이

1)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태양(態樣)「명사」 생긴 모습이나 형태.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로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모습’으로 변경하는 것이 수범자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법문의 순화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태양(態樣)은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되어 있으며, 법제처가 제시하는 순화어는 ‘형태, 모습이나 형태’임.³⁾

또한, 법문의 내용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⁴⁾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개정하고자 한 바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은 법률 표현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2023, 부록 정비권고용어 p.73

4) 의안번호 202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19. 8. 9. (임기만료폐기)

현행	개정안
第197條(占有의態樣) ①占有者는所有의意思로善意, 平穩및公然하게占有한것으로推定한다	제197조(점유의 모습)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公然)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문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일부 조문 자구에 대한 원포인트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8